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42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윤후덕·부승찬·임오경

염태영 · 안규백 · 박희승

홍기원 · 차지호 · 김문수
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 나라의 국제적·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 중 '국제적·경제적 위상 고려'라는 내용은 주요 국제기 구들이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는 인도주의, 공평, 중립, 독립의 4가지 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·경제·군사적 목 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 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국제적·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, 정치·경제·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

호 기본원칙을 수립하고자 함(안 제4조).

법률 제 호
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"피해국 정부"를 "정치·경제·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피해국 정부"로, "국제적·경제적 위상"을 "국제사회에서의 역할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)	제4조(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)
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	
<u>피해국 정부</u> 의 요청과 우리나	정치・경제・군사적 목적에 구
라의 <u>국제적 경제적 위상</u> 을	속되지 아니하고 공평하고 중
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	립적인 자세로 피해국 정부
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	국제사회에
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	<u>서의 역할</u>
수행하여야 한다.	